제96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</td><td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
(국토교통부)</td><td>1.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(신설)
○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· 효력정지 처분사유 신설(
1. 우수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
3. 「항공안전법」의 안전성인증, 조종자증명, 비행승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4. 동일 내용으로 3회 이상 불만 접수 및 사고 예방·대응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
○ 구체적인 처분기준 신설(별표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<th colspan="3">처분기준</th></tr>
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/tr>
<tr><td>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정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</td><td>효력정지 3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1년 이상 사업하지 않은 경우</td><td>효력정지 3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「항공안전법」 상 비행 규정 위반</td><td>효력정지 1개월</td><td>효력정지 3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/tr>
<tr><td>불만 접수 및 사고 예방 미조치</td><td>효력정지 1개월</td><td>효력정지 3개월</td><td>지정취소</td></tr>
</table>
▶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확대(강화) ㅇ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에서 전 톤급 어선으로 확대 ▶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	1.비중요
3	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(의류관리기)(신설) ㅇ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하고, 효율관리기준(적용범위, 측정방법 효율기준, 시험조건, 성능시험 측정방법 등) 마련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5조,제12조,제16조,제18조 2.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(전기밥솥, 전기온풍기)(강화)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상향 – 전기밥솥 :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, 측정기준 개선 – 전기온풍기 :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및 라벨표시사항 변경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5조,제12조,제16조,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효율관리기자재 제도 이관(전기레인지, 비데)(강화) ㅇ 비데를 대기전력저감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및 적용범위, 측정방법 등 기준 마련 ㅇ 전기레인지를 최저소비효율기준 품목에서 효율등급 품목으로 전환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▶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,제5조,제7조,제12조,제16조,제18조	
4	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기획재정부)	1.석유정제업자, 수출입업자, 판매업자 매점매석 등 금지(신설) ㅇ (반출·수입량 제한 : 제4조) 석유정제업자는 '24년 10월 중 반출하는 LPG부탄에 대해 ' 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%, 휘발유·경유 등에 대하여는 115% 초과 반출 금지 – 석유수출입업자는 '24년 10월 중 수입하는 휘발유·경유 등에 대해 ' 23년 같은 기간 판매한 물량의 115% 초과 수입 금지 –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'24년 10월 중 수입하는 LPG부탄에 대해 ' 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% 초과 수입 금지 – (예외) 천재지변, 수출물량 급증, 생산설비 신 · 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 가능 ㅇ (매점매석 금지 : 제5조) 석유판매업자 및 LPG 충전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사업자는 '24년 10월 중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구입하거나,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 ㅇ (보고의무 : 제7조) 기재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, 석유 및 LPG 수출입업자에게 ' 23년 10월 및 '24년 10월 중 반출·수입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가능 ▶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, 제5조,제7조	
5	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(소방청)	1.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(강화) ㅇ 탱크시험자 법인의 대표 外 임원 또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음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2.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의 결격사유(신설) ㅇ 위험물시설점검업 법인의 대표 外 임원 또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점검업을 등록할 수 없음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물순환 제품 · 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환경부)	1.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제품 · 설비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(신설) ○ 물순환 품질인증제도의 대상으로 '투수성 포장재*'를 규정하면서, 투수성 포장재의 물순환 품질인증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▲물순환개선지수 ▲동결융해품질 ▲투수성능 지속성의 세 가지 시험 항목별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* 보도 등에 적용되며 빗물이 땅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하는 포장재 ▶물순환 제품 · 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	1.비중요
7	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(강화) ○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(제정안 제3조, 별표 1) – (시설기준) 시설 종류(사무실·상담실·교육실 각각 1실 이상, 노인일자리사업장 1개 이상), 규모(사무실·상담실·교육실의 연면적 250㎡ 이상) 충족 – (인력기준) 인력 배치(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, 상근직원 7명) 및 기관장의 자격기준 충족 ▶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	1.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 기준(신설) ㅇ 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 기준 (제정안 제6조) –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제정안 제6조 제1항 각 호 기준(신청가능, 운영, 고용, 제한사유 미해당)을 모두 충족해야 함 ▶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	